

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
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

구분		내용
청약 자격	공급비율	- 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 : 총 34세대
	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며,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자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 -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-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 -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- 이혼,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,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
	당첨자 선정방법	-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」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를 이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(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포함) 50%는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. 경쟁이 있는 경우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. 또한,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① 미성년 자녀수	40점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※ 태아, 입양자녀, 전혼자녀 포함
		미성년 자녀 4명	35	
		미성년 자녀 3명	30	
② 영유아 자녀수	15점	영유아 3명 이상	1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영유아 2명	10	
		영유아 1명	5	
③ 세대 구성	5점	3세대 이상	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-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(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→ 주민센터 또는 시·구청에서 발급 가능)
		한부모 가족	5	
④ 무주택 기간	20점	10년 이상	20	- 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(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) - 신청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)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※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기간을 산정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
⑤ 해당 시·도 거주기간	15점	10년 이상	15	- 신청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)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산정 ※ 시는 광역시, 특별시 기준 / 도는 도, 특별자치도 기준 ※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
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5점	10년 이상	5	- 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.
계	100점	-	-	-

①, ②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[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]

③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
③, ④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
④, ⑤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

⑥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 :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
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,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,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우선 적용됩니다.